

『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23일

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 구 연

나. 제안이유

-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 투자 회사가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·육성
- 이에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출자금을 반영하고자 「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」 출자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출자개요

(1) 대상기관

- 기 관 명 : (주)케이앤투자파트너스
- 대표이사 : 김철우
-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3 예동빌딩 9층
- 설립근거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

(2) 출자예정액 : 금600,000천원 (3차년도)

※ 기납부액 : 1,400,000천원 (1~2차년도)

(3) 출자근거
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
-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20조

○ 사업개요

(1) 조 합 명 :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

- 한국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(지방기업) 선정 조합
- 결성근거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0조

(2) 운 용 사 : (주)케이앤투자파트너스

(3) 출 자 자

- 특 별 조 합 원 : 한국모태펀드
- 유한책임조합원 : 경상북도, 구미시,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,
강외철(개인투자자), 알앤씨(관내 기업)
- 업무집행조합원 : (주)케이앤투자파트너스

(4) 조합결성액 : 100억원

- 연도별투자계획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계	2016년	2017년	2018년
계	10,000	3,000	4,000	3,000
한국모태펀드(국비)	5,000	1,500	2,000	1,500
경 북 도	1,000	300	400	300
구 미 시	2,000	600	800	600
강 외 철	800	240	320	240
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	500	150	200	150
알 앤 씨	200	60	80	60
운 용 사	500	150	200	150

(5) 존속기간 : '16. 12. 28 ~ '24. 12. 27(8년) *출자금 납부 : 3년

(6) 투자대상

- 구미·경북 소재 중소·벤처기업
- 타지역 중소·벤처기업(관내 유치 목적)

(7) 운영방법 : 투자상담회 수시개최(업체 개별방문 등)

(8) 기대효과

- 지역경제 환경변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전략사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활성화, 일자리창출, 외부기업 유치 등

(9) 추진경과

- '16. 6. 27 지방상생펀드 운용사 최종선정
- '16. 12. 21 설립출자금(1차 6억원) 납부
- '16. 12. 2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(중소기업청)
- '17. 1. 17 사업 및 투자설명회 개최
- '17. 6. 30 출자금(2-1차 4억원) 납부
- '17. 10월 출자금(2-2차 4억원) 납부 예정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, 제20조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

「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20조

○ 예산조치 :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

○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」은

-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 지원 및 기계, 자동차, 디스플레이, 모바일 등의 기존 산업과 최첨단 신기술을 연계한 융합 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운용 펀드사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